

「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12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I. 제안이유

- 연도중 보조내시된 국·도비 보조사업 및, 국·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임.

II. 주요내용

-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0,52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,07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,960백만원이 증액된 350,313백만원, 특별회계는 1,111백만원이 증액되어 70,215백만원 임.
- 세입예산은
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교부세 100백만원, 조정교부금 410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2,213백만원,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7백만원 증액, 지방채는 1,000백만원 감액 되었으며, 특별회계는 국·도비보조금 1,977백만원, 지방채 1,000백만원 증액, 세외수입 150백만원,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,716백만원 감액되었음
- 세출예산은
일반회계 정책사업비 5,071백만원 증액, 재무활동 539백만원, 행정운영경비 2,572백만원 감액되었음.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900백만원, 재무활동 311백만원 증액, 행정운영경비 100백만원 감액 되었음.

Ⅲ. 검토내용

1. 회계별 예산규모

-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.74%인 3,070,575천원이 증액된 420,527,674천원 임.
- 일반회계는 350,313,261천원으로 1,959,879천원(0.56%)이
- 특별회계는 70,214,413천원으로 1,110,696천원(1.61%)이 증액 편성되었음.

※ 회계별 예산규모 : 붙임 1

2. 일반회계 편성현황

-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50,313,26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.56%인 1,959,879천원이 증가함.
 - ▶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고
 - ▶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100,000천원, 조정교부금 410,000천원, 보조금 2,212,552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,
 - ▶ 지방채는 1,000,000천원이 감액 되었으며
 - ▶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37,327천원이 증액 되었음.
-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살펴보면
 - ▶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00,000천원이 증액된 162,872,000천원으로 특별교부세 100,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 - ▶ 조정교부금은 7,350,000천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10,00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.
 - ▶ 보조금은 111,322,578천원으로 2,212,55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등이 1,475,963천원이 증액된 87,257,446천원, 도비보조금등이 736,589천원이 증액된 24,065,132천원이 편성되었음.

▶ 지방채는 기정예산대비 1,000,000천원이 감액된 9,000,000천원으로
정부자금채 9,000,000천원이 증액되고, 금융기관채 10,000,000천원이
감액되었음.

▶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37,327천원이 증액된
26,024,328천원 임.

※ 세입예산 총괄 : 붙임 2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.56%인
1,959,879천원이 증액된 350,313,261천원으로

▶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,

-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.44% 증액된 24,847,643천원
-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0.49%가 증액된 10,583,831천원,
- 교육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.77% 감액된 2,497,618천원,
- 문화및관광분야는 0.61%가 감액된 58,268,329천원,
- 환경보호분야는 9.10%가 감액된 22,606,221천원,
- 사회복지분야는 2.16%가 감액된 46,362,523천원,
- 보건분야는 1.41%가 증액된 5,183,380천원,
-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.14%가 증액된 70,484,417천원,
- 산업·중소기업분야는 6.97%가 감액된 1,683,328천원,
- 수송및교통분야는 0.21%가 감액된 16,477,811천원,
-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4.28%가 증액된 44,729,041천원,
- 예비비는 33.40%가 증액된 2,951,122천원,
- 기타분야는 5.57%가 감액된 43,637,997천원이 편성 되었음.

▶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,

- 안전건설과 49,718,852천원(14.19%)
- 농업기술센터 48,226,398천원(13.77%)
- 자치행정과 46,808,590천원(13.36%)

- 주민생활지원과 46,373,982천원(13.24%)
- 문화관광과 43,996,754천원(12.56%)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▶ **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,**

- 인건비는 보수 및 기타직 보수를 감액하여
기정예산대비 6.56%가 감액된 38,155,296천원
- 물건비는 일반운영비, 여비, 연구개발비등을 감액하여
기정예산대비 1.29%가 감액된 24,301,925천원
- 경상이전비는 배상금, 민간이전,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을
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0.47%가 감액된 87,117,257천원임.
-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, 민간자본이전등이 증액되어
기정예산대비 3.14%가 증액된 172,439,601천원 임.
- 보전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67.58% 증액된 3,546,000천원,
-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0.27% 감액된 19,987,490천원,
- 예비비 및 기타는 25.64% 증액된 4,765,692천원 임.

※ 세출예산 총괄(기능, 조직, 성질별) : 붙임 3, 4, 5

3. 특별회계 편성현황

- 8종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0,214,413천원으로
기정예산 대비 1.61%인 1,110,69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- 세외수입은 7,039,24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0,798천원이 감액되었고
- 보조금은 37,149,83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,976,842천원이
- 지방채는 기정예산대비 1,000,00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
-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,025,33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
1,715,348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.

-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.61%인 1,110,696천원이 증액된 70,214,413천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
 - ▶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
 - 신설급수공사비 423,000천원을 증액하고, 보수 100,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,
 - ▶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,64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,
 - ▶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
 - 예비비 397,073천원을 감액하고,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307,500천원 증액 편성하였음.
 - ▶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
 -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73,000천원을
 - ▶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,620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.

4. 계속비사업

-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5건, 특별회계 4건으로 총 9건임.
- 총사업비는 444,524,630천원이며, 2014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07,010,422천원이고,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81,797,918천원이며,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사업비는 155,716,290천원임.

5. 명시이월사업

-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70건, 특별회계 13건, 총 183건으로 명시이월액은 49,013,213,043원 임.
(국비 15,172,768,742원, 도비 6,029,052,824원, 군비 27,811,391,477원)

IV. 검토의견

1. 회계별 예산규모

-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0,52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,07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
- 일반회계는 350,31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,960백만원(0.56%)
- 특별회계는 70,21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,111백만원(1.61%)이 증액 되었음.

2. 일반회계 세입예산

-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
-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10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
- 조정교부금은 오대산 문화축전외 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410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- 보조금은 국·도비보조사업의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확보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 2,21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,
- 지방채는 국내차입금 1,00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.
-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237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.

3. 일반회계 세출예산

-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(1,282백만원, 5.44%), 공공질서 및 안정(1,004백만원, 10.49%), 농림해양수산(3,445백만원, 5.14%), 국토및지역개발(1,838백만원, 4.28%), 예비비(739백만원, 33.40%)등 6개 분야는 증가한 반면 환경보호(2,264백만원, △9.10%), 사회복지(1,022백만원, △2.16%), 기타(2,572백만원, △5.57%)등 7개 분야는 감소 되었음.

○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은

- 안전건설과 49,719백만원(14.19%)
- 자치행정과 46,809백만원(13.36%)
- 주민생활지원과 46,374백만원(13.24%)
- 문화관광과 43,997백만원(12.56%) 순이며,

○ 성질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

자본지출(5,248백만원, 3.14%), 보전재원(1,430백만원, 67.58%)
예비비및기타(972백만원, 25.64%)는 증가한 반면
인건비(2,677백만원, △6.56%), 물건비(317백만원, △1.29%)
경상이전(410백만원, △0.47%), 내부거래(2,288백만원, △10.27%)는
감소 하였음.

4.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

○ 8종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70,21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,111백만원
(1.61%)이 증액된 것으로,

- ▶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(323백만원, 1.22%),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(4백만원, 0.48%)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(873백만원, 1936.94%)
수질개선특별회계(4백만원, 0.01%) 는 각각 증액 되었으며,
- ▶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(93백만원, △12.45%)는
감액되었고,
- ▶ 주택사업특별회계,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,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
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음.

5. 종합검토의견

□ 세입예산을 보면

-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특별교부세, 특별조정교부금과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·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,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·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.

□ 세출예산을 보면

- 인건비, 경상경비등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여 “2010년도 종합운동장 보수”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5억원의 조기상환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방채 이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여집니다.
-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83건에 49,01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1%가 증가하였으며, 이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나, 명시이월사업의 증가는 내년도 건전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.
※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 : 98건/ 23,215백만원
- 기정예산 편성이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00% 감액한 사업은 14건 388백만원으로,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액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, 예산반영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.

【 100% 감액된 예산 현황】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사 업 명	사업비	비고
계		14개사업	388,200	
1	기획감사실	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최	6,000	1회추경(P115)
2	주민생활지원과	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 지원	20,000	당초(P130)
3	자치행정과	명예군민 고향나들이 프로그램운영	5,000	당초(P147)
4	“	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비	20,000	당초(P148)
5	경제체육과	강원역전마라톤대회 출전지원	10,000	당초(P159)
6	“	환경정비 재료비(특별회계)	3,000	당초(P273)
7	산림과	산양삼 연구회 구성지원	50,000	당초(P169)
8	보건의료원	만성질환 원격관리 대상자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	10,000	당초(P190)
9	농축산과	봉평메일 지리적표시 등록 연구용역	35,000	당초(P203)
10	“	축산인 한마음 행사지원	5,000	당초(P204)
11	“	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지원	13,200	당초(P204)
12	“	플라이낚시터 시범조성 사업(도비)	200,000	당초(P206)
13	기술지원과	귀농·귀촌 활성화 프로그램	6,000	당초(P208)
14	“	우수한약재유통센터 위탁자 선정 평가위원 수당	5,000	당초(P210)

○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추경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그러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V. 참고자료

붙임1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기정액	비교증감	
	예산액	%		증감액	%
총 계	420,527,674	100.00	417,457,099	3,070,575	0.74
일 반 회 계	350,313,261	83.30	348,353,382	1,959,879	0.56
특 별 회 계	70,214,413	16.70	69,103,717	1,110,696	1.61
공기업특별회계	26,774,639	6.37	26,451,639	323,000	1.22
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	26,774,639	6.37	26,451,639	323,000	1.22
기타특별회계	43,439,774	10.33	42,652,078	787,696	1.85
주택사업특별회계	1,552	0.00	1,552	0	0.00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	759,782	0.18	756,133	3,649	0.48
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	918,071	0.22	45,071	873,000	1936.94
수질개선특별회계	31,914,510	7.59	31,910,890	3,620	0.01
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	9,091,610	2.16	9,091,610	0	0.00
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	103,158	0.02	103,158	0	0.00
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특별회계	651,091	0.15	743,664	△92,573	△12.45

붙임2

세입예산 총괄

(단위:천원)

구분	예산액		기정액	비고증감		
	예산액	%		증감액	%	
합계	420,527,674	100.00	417,457,099	3,070,575	0.74	
일반회계	350,313,261	100.00	348,353,382	1,959,879	0.56	
자체수입	소계	33,744,355	9.63	33,744,355	0	0.00
	지방세수입	23,206,094	6.62	23,206,094	0	0.00
	세외수입	10,538,261	3.01	10,538,261	0	0.00
	- 경상적세외수입	5,883,711	1.68	5,883,711	0	0.00
	- 임시적세외수입	4,654,550	1.33	4,654,550	0	0.00
이전수입	소계	281,544,578	80.37	278,822,026	2,722,552	0.98
	지방교부세	162,872,000	46.49	162,772,000	100,000	0.06
	조정교부금등	7,350,000	2.10	6,940,000	410,000	5.91
	보조금	111,322,578	31.78	109,110,026	2,212,552	2.03
	- 국고보조금등	87,257,446	24.91	85,781,483	1,475,963	1.72
	- 시·도비보조금등	24,065,132	6.87	23,328,543	736,589	3.16
지방채	9,000,0000	2.57	10,000,000	△1,000,000	△10.00	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26,024,328	7.43	25,787,001	237,327	0.92	
- 보전수입 등	25,997,728	7.42	25,760,401	237,327	0.92	
- 내부거래	26,600	0.01	26,600	0	0.00	
특별회계	70,214,413	100.00	69,103,717	1,110,696	1.61	
자체수입	소계	7,039,245	10.03	7,190,043	△150,798	△2.10
	세외수입	7,039,245	10.03	7,190,043	△150,798	△2.10
	- 경상적세외수입	6,560,318	9.34	6,802,116	△241,798	△3.55
	- 임시적세외수입	478,927	0.68	387,927	91,000	23.46
이전수입	소계	37,149,833	52.91	35,172,991	1,976,842	5.62
	보조금	37,149,833	52.91	35,172,991	1,976,842	5.62
	- 국고보조금등	34,021,809	48.45	32,044,834	1,976,975	6.17
	- 시·도비보조금등	3,128,024	4.45	3,128,157	△133	0.00
지방채	1,000,000	1.42	0	1,000,000	순증	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25,025,335	35.64	26,740,683	△1,715,348	△6.41	
- 보전수입 등	6,493,345	9.25	5,920,950	572,395	9.67	
- 내부거래	18,531,990	26.39	20,819,733	△2,287,743	△10.99	

붙임3

세출예산 총괄(기능별)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액		기정액	비교증감	
	예산액	%		증감액	%
합 계	420,527,674	100.00	417,457,099	3,070,575	0.74
일 반 회 계	350,313,261	100.00	348,353,382	1,959,879	0.56
일반공공행정	24,847,643	7.09	23,566,025	1,281,618	5.44
공공질서및안전	10,583,831	3.02	9,579,397	1,004,434	10.49
교육	2,497,618	0.71	2,542,558	△44,940	△1.77
문화 및 관광	58,268,329	16.63	58,624,144	△355,815	△0.61
환경 보호	22,606,221	6.45	24,870,398	△2,264,177	△9.10
사회 복지	46,362,523	13.23	47,384,952	△1,022,429	△2.16
보건	5,183,380	1.48	5,111,515	71,865	1.41
농림해양수산	70,484,417	20.12	67,039,254	3,445,163	5.14
산업중소기업	1,683,328	0.48	1,809,350	△126,022	△6.97
수송 및 교통	16,477,811	4.70	16,512,328	△34,517	△0.21
국토및지역개발	44,729,041	12.77	42,891,200	1,837,841	4.28
예 비 비	2,951,122	0.84	2,212,168	738,954	33.40
기 타	43,637,997	12.46	46,210,093	△2,572,096	△5.57
특 별 회 계	70,214,413	100.00	69,103,717	1,110,696	1.61
일반공공행정	9,124,203	12.99	9,124,203	0	0.00
환경 보호	57,349,280	81.68	56,922,660	426,620	0.75
사회 복지	674,205	0.96	670,556	3,649	0.54
산업·중소기업	1,225,571	1.75	45,071	1,180,500	2619.20
국토및지역개발	446,749	0.64	846,822	△400,073	△47.24
기 타	1,394,405	1.99	1,494,405	△100,000	△6.69

붙임4

세출예산 총괄(조직별)

(단위:천원)

구	분	예산액		기정액	비교증감	
		예산액	%		증감액	%
합 계		420,527,674	100.00	417,457,099	3,070,575	0.74
일 반 회 계	소 계	350,313,261	100.00	348,353,382	1,959,879	0.56
	기획감사실	9,178,094	2.62	7,025,140	2,152,954	30.65
	문화관광과	43,996,754	12.56	44,192,435	△195,681	△0.44
	주민생활지원과	46,373,982	13.24	47,185,239	△811,257	△1.72
	종합민원과	1,700,007	0.49	1,699,000	1,007	0.06
	자치행정과	46,808,590	13.36	49,604,971	△2,796,381	△5.64
	재무과	7,163,583	2.04	7,151,583	12,000	0.17
	경제체육과	15,332,340	4.38	15,605,752	△273,412	△1.75
	환경위생과	14,143,860	4.04	16,399,078	△2,255,218	△13.75
	산림과	14,402,815	4.11	14,421,392	△18,577	△0.13
	안전건설과	49,718,852	14.19	45,689,418	4,029,434	8.82
	도시주택과	29,274,451	8.36	29,316,397	△41,946	△0.14
	동계올림픽추진단	2,374,046	0.68	2,408,040	△33,994	△1.41
	보건의료원	5,220,833	1.49	5,107,968	112,865	2.21
	농업기술센터	48,226,398	13.77	46,011,658	2,214,740	4.81
	의회사무과	781,961	0.22	781,961	0	0.00
	상하수도사업소	9,980,300	2.85	10,030,259	△49,959	△0.50
	읍·면	5,636,395	1.61	5,723,091	△86,696	△1.51
	특 별 회 계	소 계	70,214,413	100.00	69,103,717	1,110,696
주민생활지원과		759,782	1.08	756,133	3,649	0.48
재무과		9,091,610	12.95	9,091,610	0	0.00
경제체육과		1,569,162	2.23	788,735	780,427	98.95
환경위생과		31,914,510	45.45	31,910,890	3,620	0.01
도시주택과		104,710	0.15	104,710	0	0.00
상하수도사업소		26,774,639	38.13	26,451,639	323,000	1.22

붙임5

세출예산 총괄(성질별)

(단위:천원)

구	분	예산액		기정액	비교증감	
		예산액	%		증감액	%
합 계		420,527,674	100.00	417,457,099	3,070,575	0.74
일반회계	소 계	350,313,261	100.00	348,353,382	1,959,879	0.56
	인 건 비	38,155,296	10.89	40,832,111	△2,676,815	△6.56
	물 건 비	24,301,925	6.94	24,618,462	△316,537	△1.29
	경 상 이 전	87,117,257	24.87	87,526,817	△409,560	△0.47
	자 본 지 출	172,439,601	49.22	167,191,493	5,248,108	3.14
	보 전 재 원	3,546,000	1.01	2,116,000	1,430,000	67.58
	내 부 거 래	19,987,490	5.71	22,275,233	△2,287,743	△10.27
	예 비 비 및 기 타	4,765,692	1.36	3,793,266	972,426	25.64
특별회계	소 계	70,214,413	100.00	69,103,717	1,110,696	1.61
	인 건 비	1,298,925	1.85	1,403,925	△105,000	△7.48
	물 건 비	716,070	1.02	713,209	2,861	0.40
	경 상 이 전	5,776,578	8.23	5,773,790	2,788	0.05
	자 본 지 출	61,805,819	88.02	60,509,819	1,296,000	2.14
	용 자 및 출 자	1,000	0.00	1,000	0	0.00
	내 부 거 래	42,000	0.06	42,000	0	0.00
	예 비 비 및 기 타	574,021	0.82	659,974	△85,953	△13.02

□ 지방자치법

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[제127조제3항](#)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42조(계속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,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(年限)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4.5.28.>

1.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(이하 "재난"이라 한다) 복구사업
2.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